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5209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유장미

피 고 1. A

2. B교회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405,717원 및 그 중 3,240,537원에 대하여 2021. 6. 21.부터 2022. 1. 18.까지는 연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교회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소외 망 C과 피고 B교회 사이에 2021. 2. 2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3,405,717원 및 그 중 3,240,537원에 대하여 2021.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B교회는 원고에게 3,405,717원 및 그 중 3,240,537원에 대하여 2021.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위 원리금 합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에서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망 C(이하 ‘소외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소외 망인이 소외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망인을 대신하여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망인은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과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2016. 8. 26. 보증금액을 7,2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8. 25.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소외 망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7,2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신용보증기한을 2021. 8. 20.로, 보증금액을 3,200,000원으로 각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는데, 소외 망인이 2021. 2. 16.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망인을 대위하여 2021. 6. 21.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3,240,537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절 절차비용으로 165,18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10%인 사실, 소외 망인이 2021. 7. 14.일 사망함에 따라 그 자인 피고 A이 소외 망인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

소외 망인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인 2021. 2. 2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C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지만,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독거노인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약 5개월 후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망인은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소외 망인이 병원비나 요양병원에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은 6천만 원에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소외 망인에 대한 채권은 약 350만원으로 매각대금에 비하면 채권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 망인과 피고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비나 요양병원 입원비 등 정당하고,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및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 지층 각 109.62㎡

(내역: 지층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1층, 2층은 연와조 슬래브 지붕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9,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적 벽돌조 49.4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34분의 39

-이상-

